

울산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가단6160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4. 4. 11.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33.32㎡의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22. 4. 30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조한기

별지